

●관세청고시 제2026-13호
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6-10호, 2026.01.22.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26년 03월 04일

관세청장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일부개정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붙임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26-13호(2026.03.04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)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.

[별표]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

연번	고시번호(시행일)	품명	비고
661	2026-13호('26.03.04.)	Small red beans, frozen	
662	2026-13호('26.03.04.)	Emulator 등 2건	
663	2026-13호('26.03.04.)	Speaker	
664	2026-13호('26.03.04.)	Susceptor	
665	2026-13호('26.03.04.)	Diff Assy	
666	2026-13호('26.03.04.)	Nonwovens of man-made filaments	

661. Small red beans, froze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6-13호 (2026.03.04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Small red bean, frozen; 당통팥(냉동)	품목분류과-105107 (’05.08.03.)

○ 물품설명

- 설탕이 첨가된 삶은 냉동 팥
- ※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0710.22-0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2004.90-9000호

○ 변경사유

-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2004.90-9000호에 분류(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662. Emulator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6-13호 (2026.03.04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Measurement System ; VR5 CHANNEL EMULATOR (VR5-SYS-MOTAA8C)	품목분류1과-2428 ('13.09.16.)
2	Fading Simulator ; MF6900A	품목분류1과-773 ('11.07.25.)

○ 물품설명

- 통신장비 측정기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에뮬레이터
- ※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9030.40-9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543.70-9090호

○ 변경사유

-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543.70-9090호에 분류(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663. Speak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6-13호 (2026.03.04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LOUD SPEAKER; P21-752941(94100-S1000);	품목분류3과-5426 (’24.10.16.)

○ 물품설명

- 차량에 사용하는 확성기(스피커)
※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512.30-0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518.29-9000호

○ 변경사유

-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제8518.29-9000호에 분류(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664. Suscep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6-13호 (2026.03.04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; 200MM SUSCEPTOR HOLDER, ASM TOP+ BOTTOM RING KIT; EPILON2000;	품목분류4과-4523 ('18.09.20.)

○ 물품설명

-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에 사용하는 서셉터
- ※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6903.10-9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486.90-2040호

○ 변경사유

-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의 부품에 해당하므로 제8486.90-2040호에 분류(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665. Diff Ass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6-13호 (2026.03.04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DIFF ASSY; 97R31-00010;	품목분류1과-122 (’16.01.27.)

○ 물품설명

- 차동기어에 사용하는 기어 조립품
- ※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483.40-901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8483.40-9090호

○ 변경사유

- 기어링에 해당하므로 제8483.40-9090호에 분류(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666. Nonwovens of man-made filament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6-13호 (2026.03.04.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번호	품명	종전 공문
1	7676Nonwovens of man-made filaments, Weighing more than 70 g/m ² but not more than 150 g/m ² ; Filter 절곡여지	품목분류4과-3637 ('17.05.11.)
2	Nonwoven of man-made filaments, laminated; FILTER MEDIA; R.KOREA	품목분류2과-8324 ('14.12.11.)

○ 물품설명

-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부직포

※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5603.14-900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5603.13-9000호

○ 변경사유

-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5603.13-9000호에 분류 (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